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 지침

I

추진 배경 및 목적

- 미신고 숙박업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중개 제한 의무 신설
 -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및 제22조(과태료), 시행일 '26.11.12.
 -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처분
- 미신고 숙박업의 온라인 중개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제시

II

기본 운영 방향

-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우선
 -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사실을 우선 확인하고, 해당 업소가 온라인에서 중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플랫폼에 사실관계 확인
 - * 불법 영업 개별 상품에 한하여 자료를 요구, 전체 업소 자료 등 과도한 자료 요구는 지양
-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중심
 -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신고증의 진위 감정, 정상영업 상태의 상시 확인 등을 법적 의무로 확대하지 않음
- 침익적 처분의 엄격한 판단
 - 미신고 숙박업소의 단순 노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영업신고증 미확인 상태에서의 중개 여부, 발견 즉시 삭제 여부 및 고의·과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III

적용 대상 및 법정 의무

1. 적용 대상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숙박업자를 직접 모집하여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OTA, 온라인여행사) 및 OTA 상품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

* 통신판매중개 해당 여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

용어	정의	법적근거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2. 법정 의무

구분	법정 의무	지자체 판단 기준
사전확인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증 확인 -다만, 같은 법 적용 제외 유형은 관계 법령상 등록증·신고 확인증 등 적법 영업근거 확인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령상 적법 영업 증빙의 확인 여부
중개제한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령상 적법 영업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통신판매 중개 금지	미확인 상태에서 중개가 계속 되었는지 여부
사후조치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한 경우는 제외	인지 시점과 삭제 완료 시점, 삭제 지연 사유

3. 플랫폼 유형별 의무 이행 및 지자체 확인

- 직접 등록 플랫폼(OTA)는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으므로, 영업신고증을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미신고 사실 통보 후 삭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 연계·노출형 플랫폼은 숙박업자로부터 신고증을 직접 제출받지 않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상품공급업체 등 공급관계와 미신고 사실 통보 후 삭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구분	직접 등록 플랫폼(OTA)	연계·노출형 플랫폼
운영형태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거나 중개 의뢰를 받아 소비자에게 예약·중개 서비스를 제공	OTA 또는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형태
의무이행	상품 등록·중개 전에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중개하지 않음	해당 상품이 적법한 숙박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하지 않음
미신고 숙박업 발견시	해당 상품 즉시 삭제	원 OTA 등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플랫폼에서 해당상품 즉시 삭제
지자체 확인 방향	영업신고증 확인 여부, 제출·확인 시점, 미확인 상태에서의 중개 여부, 발견·인지 후 삭제 시점 등을 확인	원 OTA 또는 상품공급업체와의 공급관계, 지자체 통보 수신일시, 상품 삭제 일시·결과

4. 적용 시점

- 2026년 11월 12일 이후 이루어진 통신판매중개 행위부터 적용함
 - 법 시행 전에 등록된 기존 상품이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예약·중개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대상

IV

사전 안내 및 조치

1. 사전 안내

- 지자체는 관내 숙박업자 및 관련 협회에 ①개정 법률의 시행일, ②온라인을 통한 숙박영업시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증 제출 필요성과 ③미제출 시 온라인 중개 중단 가능성 등을 안내
-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법 시행 전 기존 상품의 신고증 확인 절차를 정비하도록 안내

2. 기존 등록상품에 대한 조치

- 법 시행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령상 적법한 숙박营业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은 시행일 이후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V

미신고 숙박업 적발 시 처리 절차

1. 미신고 숙박업 위반사실 확인

-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숙박업·민박업 등록·신고 여부 확인
 - 현장조사, 온라인 예약·결제자료, 광고화면, 이용자 진술 등으로 실제 숙박영업 사실을 확인
 - 적법한 등록·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분 및 고발 조치 준비

2. 온라인 중개 사실 확인

- 온라인상 미신고 숙박업소의 검색·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
 - 중개 플랫폼명, 상품명, 숙소 주소, 상품 ID, URL 등을 조회 일시가 확인될 수 있도록 화면 캡처 또는 출력물 확보

3. 플랫폼 통보 및 삭제 요청

- 미신고 숙박업의 온라인 중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상품이 확인되는 모든 예약·중개 플랫폼에 업소 정보, 위반 근거 및 상품 식별정보를 기재하여 동시에 통보
- 해당 상품의 '즉시 삭제'와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해당 상품을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함

4. 통보 후 조치 확인

- 통보를 받은 플랫폼이 시스템상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회신한 경우, 제4조의2제2항의 제외 규정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
- 상품을 계속 노출·예약 가능 상태로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를 지연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위한 추가 조사를 착수

VI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한 사실 조사

1. 조사 근거와 범위

- 과태료 부과를 위한 플랫폼 조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실시
- 질서위반행위 발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진술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가능
-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

2. 확인 항목 및 요구자료

확인 항목	요구자료(예시)	확인 목적
사업자 및 위반 상품 정보	법인명, 담당부서, 위반 상품명·상품 ID 또는 URL	처분 대상과 위반 상품 특정
중개 기간	상품 등록·노출 시작일, 종료일(삭제일)	중개 사실 확인
상품 공급관계	해당 상품을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았는지 여부	제출자료 유형 구분
직접 등록 플랫폼 (OTA)	제출받은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 령상 등록증·신고확인증, 제출일시·경 로 또는 미확보 사실	법정 확인 의무 이행 여 부
공급받은 플랫폼 (연계·노출형)	직접 계약한 상품공급업체(원 OTA 등)의 명칭·연락처, 원 공급자가 숙박 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를 확인한 자료	신고증 확인 자료 보유주체 파악, 공급·관리체계 확인
인지 시점	지자체 통보·민원·내부 신고의 수신 일시, 직접 등록 플랫폼은 서류 미제출·확인 불가 인지 시점	미확인 상태의 인지 시점 확인
삭제 조치	삭제 일시, 삭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또는 처리내역	즉시 삭제 여부 확인

3. 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 대상 상품, 조사 사유, 요구자료,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공문으로 자료제출 요구
 - 제출기한은 요구자료의 양, 난이도 및 사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부여
 - 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 기회를 부여하되, 자료 미제출 사
실만으로 원래의 과태료 위반을 추정하지 않음
- 전체 숙박상품 목록 또는 모든 신고증 자료, 과태료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결제정보는 요구하지 않음

VII

위반 여부 판단 기준

1.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유형	확인 사실	처리 방향
미확인 중개 및 미삭제	영업신고증 또는 적법한 숙박영업 증빙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중개를 하고 삭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절차
통보 후 미삭제	지자체가 미신고 숙박업임을 구체적으로 통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노출·예약 가능 상태 유지	
미확인 중개 후 삭제	신고증 또는 적법한 숙박영업임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상당 기간 중개한 뒤 지자체 단속·통보 전후에 삭제한 경우	발견·인지 시점 및 삭제 시점을 확인하여 즉시 삭제 예외 적용 여부 판단

2.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확인 사실	처리 방향
영업신고증이 위조·변조된 것으로 사후 확인되었으나 플랫폼이 외관상 정상인 신고증을 제출받음	진위감정 의무가 법에 없으므로 고의·과실 및 인지 후 조치를 추가 확인
플랫폼이 정기적인 영업상태 재확인을 하지 않음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화면 캡처만 있고 예약 가능 여부 또는 중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실제 중개 가능 상태를 추가 확인
연계·노출형 플랫폼으로 원 공급 OTA의 DB를 연동 받음	공급업체 정보와 삭제 결과를 확인한 후 직접 등록 플랫폼의 자료와 종합하여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증은 없으나 관계 법령상 등록증·신고확인증이 제출됨	해당 숙박유형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소관부서에 확인하고, 적법한 경우 미신고 숙박업으로 보지 않음

3. 고의 또는 과실 판단

-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
-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
 - 신고증을 실제로 제출받았는지
 - 자료가 명백히 부적정하거나 누락되었는데도 중개했는지
 - 지자체 통보 등으로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중개했는지
 - 인지 후 삭제조치를 지연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VIII | 위반사항 처리

1. 과태료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 실시 후 진행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500만원

2. 관할 및 후속조치

-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실과 온라인 상품을 확인하여 조사를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 동일 플랫폼에 여러 미신고 숙박업소가 확인된 경우, 숙박업소 적발 건별로 중개행위 및 사실관계 확인
-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고발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후속조치를 별도로 진행

참고 1

위반사항 확인 체크리스트(예시)

연 번	확인사항	확인결과	주요 자료
1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또는 관계 법령상 등록·신고가 없는가	☐ 예 ☐ 아니오	신고대장
2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가	☐ 예 ☐ 아니오	관계부서 확인
3	실제 숙박영업 사실이 확인되는가	☐ 예 ☐ 아니오	현장·예약자료
4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증
5	시행일 이후 플랫폼에서 예약·중개가 가능했는가	☐ 예 ☐ 아니오	화면·URL
6	검색되는 모든 플랫폼에 위반사실과 삭제 요청을 통보했는가	☐ 예 ☐ 아니오	발송 공문
7	해당 플랫폼이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았는가	☐ 예 ☐ 아니오	플랫폼 회신
8	직접 등록 플랫폼이 영업신고증 또는 적법 영업 증빙을 확보했는가	☐ 예 ☐ 아니오	제출파일
9	공급받은 플랫폼이 직접 계약한 상품공 급업체(OTA 등) 정보를 제출했는가	☐ 예 ☐ 아니오	플랫폼 회신
10	서류 미확인 또는 미신고 사실 인지 후 즉시 삭제했는가	☐ 예 ☐ 아니오	통보·삭제 기록
11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는가	☐ 예 ☐ 아니오	전체 소명자료

제목: 미신고 숙박업 상품 삭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지자체의 조사 결과 아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등록 없이 숙박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귀사의 온라인몰에서 해당 상품이 중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관련 상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아래 자료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나. 조사 대상 상품명·상품 ID 또는 URL, 등록·노출 시작일 및 종료일

다. 해당 상품을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았는지 여부

-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은 경우: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령상 등록·신고 증빙, 제출·확인 일시 및 미확인 사실 인지 시점
-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직접 계약한 상품공급업체 (OTA 등)의 명칭·연락처, 원 공급자가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자료

라. 상품 삭제 일시와 삭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3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주요 Q&A

Q1. 미신고 숙박업소가 플랫폼에 게시돼 있으면 곧바로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게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판매중개를 했는지, 미신고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즉시 삭제했는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Q2. 플랫폼이 위조·변조된 영업신고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위조 신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진위 감정이나 행정데이터 대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된 신고증의 외관상 이상 여부, 플랫폼의 인지 여부, 인지 후 삭제 조치와 고의·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폐업·영업정지 상태가 된 숙박업소를 플랫폼이 계속 중개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문상 플랫폼에 영업상태를 상시 확인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통보 등으로 현재 적법한 신고상태가 아님을 인지한 뒤에도 중개를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Q4. 지자체가 불법숙박업 적발 사실을 플랫폼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요?

A. 명시적인 법정 통보의무는 없으나, 플랫폼의 즉시 삭제와 불법숙박 유통 차단을 위해 적발 후 신속히 통보하는 것을 운영상 원칙으로 합니다.

Q5. 연계·노출형 플랫폼도 조사 대상인가요?

A.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자체가 화면만으로 원 OTA와 연계플랫폼을 미리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이 검색되는 모든 플랫폼에 한 번에 통보하고, 각 플랫폼이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등록·중개 의뢰받았는지 여부를 회신하도록 합니다. 직접 등록 플랫폼에는 신고증 확인자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플랫폼에는 직접 계약한 상품공급업체 정보와 삭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Q6.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받은 숙박상품은 어떤 자료로 공급관계를 확인 하나요?

A. 우선 해당 플랫폼이 직접 계약한 상품공급업체의 명칭·연락처 및 계약·공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위 공급업체 등 관련 자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7. 패키지여행·에어텔이나 예약대행업체, 대형여행사가 관여하는 경우 누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우선 각 사업자가 실제 거래구조와 수행 기능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중개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Q8. 야영장 내 글램핑·카라반 숙박상품도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한가요?

- A. 시설의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계 법령상 등록서류를 통해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등록된 야영장인지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야영장업이 등록된 사업 범위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야영장업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영업형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즉시 삭제'는 몇 시간 이내를 의미하나요?

- A. 법령에 정해진 획일적인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플랫폼이 사실을 인지한 뒤 시스템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않고 삭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10. 플랫폼이 우선 비공개·예약차단만 하면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 비공개·예약차단은 긴급 차단조치로 고려할 수 있으나, 법문상 삭제와 당연히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삭제 완료 여부와 후속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Q11. 기존에 등록된 상품도 법 시행일부터 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 A. 네. 시행 전 등록된 상품이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12. 플랫폼에 전체 입점업소 신고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A. 개별 사건의 과태료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수자료 요구는 지양합니다. 처분을 위한 조사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Q13. 과태료 부과 전에 플랫폼이 삭제하면 모두 면제되나요?

- A. 아닙니다. '발견 즉시 삭제'는 위반 후 언제든지 삭제하면 과태료가 면제 되는 사후 치유 규정이 아닙니다. 영업신고증 또는 관계 법령상 적법 영업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중개한 뒤 삭제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고, 뒤늦은 삭제도 이미 이루어진 미확인 중개행위를 소급하여 해소하지 않습니다. 신고증 미확인 인지 시점, 중개기간, 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Q14.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뒤에만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A.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자체 조사 및 객관적 자료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영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6. 11. 12.]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자. 법 제4조의2의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500

참고 5

숙박업종별 근거 법령 및 신고(등록)증

업종	운영형태	근거법령	신고(등록)증
모텔	일반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증
호텔 /리조트	일반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증
	호텔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호스텔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펜션	일반펜션 (관광펜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제주 휴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주특별법 제251조	영업신고증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자연휴양림 지정 및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고시문 +소재지 확인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게스트 하우스	일반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사업 등록증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한옥숙박	일반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증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사업 등록증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캠핑장	야영장업 (일반·자동차)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사업 등록증